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4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허 영·위성곤·전재수

박상혁 • 주철현 • 김동아

홍기원 • 박지원 • 김영진

조 국 · 윤건영 · 이연희

임미애·백승아·박해철

오세희 • 김 유 • 이기헌

박수현 • 이소영 • 박희승

채현일 의원(2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,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.

그런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, 연체금 가산, 급여제한,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, 이러 한 악순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, 80세 이상

인 노인,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·임산부로 확대하고,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,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7조 및 제81조).

법률 제 호

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2항 단서 중 "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"을 "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미성년자
- 2. 80세 이상인 사람
- 3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
  - 나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

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여야 한다.

- ⑧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- 1. 천재지변,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- 2.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
- 3. 그 밖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77조(보험료 납부의무) ① (생	제77조(보험료 납부의무) ① (현				
략)	행과 같음)				
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	2				
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					
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					
다. 다만, <u>소득 및 재산이 없는</u>	<u>다음 각</u>				
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	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	
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사람은				
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					
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					
<u>&lt;신 설&gt;</u>	<u>1. 미성년자</u>				
<u>&lt;신 설&gt;</u>	2. 80세 이상인 사람				
<u>&lt;신 설&gt;</u>	3.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				
	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				
	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				
	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				
	<u>사람</u>				
	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				
	제1항에 따른 장애인				
	나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				
	호에 따른 임산부	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		
제81조(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	제81조(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				

처분) ① ~ ④ (생 략) <신 설>

⑤ (생략)

⑥ 공단은 <u>제5항</u>에 따라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 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처분	·) ①	~ 4	) (현	행과	같	음)	)
<u>(5)</u>	공단은	<u>은</u> 제4	[항에	明記	1	통	보
<u>서를</u>	발 :	송하는	경우	<u> </u> 통	- 보	서-	를
<u>발송</u>	하였	다는 /	사실을	을 전	화분	통호	화,
<u>휴대</u>	전화	문자	전송	등	보	건.	<u>복</u>
<u>지부</u>	령으	로 정	성하는	ㅂ. C	납	0	로
추가 안내하여야 한다.							
<u>6</u> (	현행	제5항	과 길	음)			

<u>7</u>	<u>제6항</u>	

---.

⑧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도난 등으로 인해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경우

- 2.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

   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

   처한 경우
- 3. 그 밖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